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제명 변경

- 당초 :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변경 :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안 별표)

- 당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변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표기 방식 변경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안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도모 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규정에서 시의”를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중 “도모 할”을 “도모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별표 규정”을 “별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장실내에”를 “화장실 내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단체·개인등”을 “단체·개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을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물내부”

를 “건물 내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알 수”를 “알 수”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사등에”를 “행사 등에”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풍시설등을”을 “환풍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알아 불”을 “알아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

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시근무토록”을 “상시 근무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이행 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별표1호”를 “별표”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3.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20	30
4. 법 제19조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법 제14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u>	<u>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중화장 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 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중화 장실 등에 관한 법률</u>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u>필요</u> ----- ----- ----- <u>도모함</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중화 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 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유료 화장실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u>공중화 장실등</u> ”이란 「 <u>공중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u> 」----- ----- <u>따른</u> ----- ----- -----.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u>각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u>	제3조(적용의 범위) ① ----- <u>각 호에서</u> ----- ----- ----- -----.
②법 제3조제2호에서 “ <u>관광진 흥법 제2조 제6호 · 제7호 · 제1 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관 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u>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 <u>관광 진흥법</u> 」 제2조제6호 · 제7호 · <u>제10호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 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u>

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 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2. (생략)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생략)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

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 도
모할 -----

-----.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3. ----- 화장실 내에 -----

-----.
4. (현행과 같음)
5. -----
----- 「장애인·

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
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
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등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
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
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
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
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 단체·개인
등-----.

② 제1항에 따라 -----
----- 예산
의 범위-----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생략)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각 호-----

---.

1. --- 3회 이상 -----

---.

2. (현행과 같음)

3. -----

----- 연 1회 이상 -----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지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
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
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
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
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
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
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
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
실 중 -----

--. -----
- 건물 내부-----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법 제9조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

----- 알 수 -----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생 략)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 관할구역 안-----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 각 호-----.

1. 행사 등에 -----
----- 고려한 ----

-----.
2. (현행과 같음)
3. ----- 환풍 시설 등을 -----.
4. -----

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
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
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
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
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
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알아볼 -----
-----.

②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
-----.

③ -----

----- 지체
없이-----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1
5일 이내-----

----- 1
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

③ -----

- 별지 제3호 서식-----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각 호-----
-----.

1. 제8조에 따른 -----
-----.

2. 제16조에 따른 -----
-----.

3. ----- 상시 근무하도록 -----.

4. 그 밖에 -----

-- 이행하여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 은 <u>법 제21조의 규정</u> 에 의한 과 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u>별표1</u> <u>호</u>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법 제21조에 따른</u> ----- ----- <u>별표</u>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u>관하여 필요</u> 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 <u>필요</u> -----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시행일 : 2017.3.30.]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소관 실 · 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우 준 수
	담 당 자	김 형 순 (480-5282)